법과 기업 연구 제12권 제1호 DOI : 10.35505/sjlb.2022.4.12.1.99

중대재해처벌법상 기업의 형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 성 훈**

Ⅰ. 들어가며
Ⅱ. 중대재해법의 제정 과정
Ⅲ.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Ⅳ.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검토 및 제언
Ⅴ. 나오며

국문초록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의 제정은 그러한 비극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입법과정과 시행령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전 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그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필연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논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즉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에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이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815)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그러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는 동법 상 그들에게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즉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케 해야 하는 틀의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법에 따르면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은 특정업무에 대한 일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법은 기존의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올바른 이해의 시작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 등을 처벌 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결코 실패한 법률이라고 속단할 순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모든 법률들이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중대재해법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견디면서 더욱 단단해져 동법의 본래 제정목적인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핵심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기업의 형사책임, 독립모델

Ⅰ. 들어가며

2018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1]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와 바람과는 달

1) 이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8.1.23.)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지 50%로 이하로 줄이기 위해 발주자 · 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한

리 대형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2)]

즉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사고, 2017년 고교 실습생 컨테이너 압사사고, 2018년 충남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3)],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20년 6월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창원 효성중공업 60대 노동자 압사사고, 2020년 10월 6일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학생의 사망사고, 2021년 1월 29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붕괴사망사고, 2월8일 요진건설 승강기 설치작업 중 추락사망사고, 2월 11일 여수국가 산단 여천NCC 3공장 화학물 폭발사망사고, 그리고 가장 최근인 제주대 기숙사 철거현장 구조물 붕괴사고와 당진현대제철 대형용기 근로자 추락사고 등 지금도 중대한 대형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4)] 이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중대한 시민재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원인은 단순히 그 업무를 수행 했던 작업자(노동자)의 과실이 아닌 최소한의 안전설비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발생했던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기업에 부과된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에게도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이라 한다)을

바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1.22, 2면).

2)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9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수 2020명이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855명이라고 한다(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현황 분석", 2020.12, 9면).

3)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사망한 뒤 그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여전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을 부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을,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장관이 '전면 작업중지권'를 부여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권리와 권한들이 제대도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후 현재 1월29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붕괴사고를 시작으로 하여, 요진산업 승강기 추락사고, 두성산업 제품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메탄에 의한 근로자 급성중독사건, 여수 국가 산단 여천NCC 3공장 화학물 폭발사고, 현대건설 고속도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삼강에스엔씨 선박컨테이너 난간 수리용 가스 호스 운반 중 추락사고, 쌍용C&E 이 동해공장 시설물 관련 건설공사 중 추락사고, 제주대 기숙사 철거 현장 구조물 붕괴사고, 당진 현대제철 근로자 추락사고 등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그 중 두성산업 근로자 급성중독사건는 다른 사건과 달리 첫 직업성 질병자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대재해는 중소제조업, 건설, 화학 등 업종을 가리기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면 개정(2021.1.16. 시행)하는 한편 관련 정책들 또한 새로이 정비하였다.[5] 그러나 산안법으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이라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공포되었다.[6]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제 시행 중에 있는 중대재해법은 시행도 되기 전부터 중대재해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위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과잉처벌이 우려되어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다.[7] 이와 달리 동법에 대해 산안법에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피해 등을 보상하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이 제정됨으로써 사업장내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방지하는데 획기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하기도 한다.[8]

살피건대 여타 다른 법률들의 입법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법 또한 입법화 과정, 시행 전 그리고 시행 중인 현재에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생각건대, 그러한 논란의 중심은 동법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와 의무의 내용 및 이행조치, 그리고 기업(법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자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보건확보'라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의 불명확화로 현재 뜨거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5) 고용노동부는 산안법 전부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하고자 산업안전근로감독관을 2017년 409명에서 2020년 578명으로 증원배치 하였다.

6) 중대재해법 도입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216면; 김혜진,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21.03; 조기홍, 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 - 위험의 외주화 속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월간 한국노총』 제541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8; 임재범, 노동존중 실천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월간 한국노총』 제562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 손익찬,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 『월간 한국노총』 제562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 한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년 평가와 전망, 매일노동뉴스 기획좌담회, 『산업보건』 제386권, 대한산업보건협회, 2020; 한창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261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최명선/김경희/이조은,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263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등 참조.

7) 이근우, 앞의 논문, 218면 이하;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사회법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12, 17면;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쟁점과 남겨진 과제", 『과학기술과 법』 제27집 제2호,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06, 55면 이하;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 74면 이하.

8)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쟁점과 법정책적 과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 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02.28, 112면.

주지하듯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021년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이 시행 중인 현 시점에도 그러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현 시점에서 중대재해법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 사항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하 본고에서는 우선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고자 제정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대재해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법의 핵심쟁점인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대해 검토·제언해보고자 한다.

II. 중대재해법의 제정 과정

1. 중대재해법의 도입

중대재해법(당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은 2017년 4월 故노회찬 의원이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故노회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가 일어나도 경영책임자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중간생략...) 이는 기업의 조직구조 때문에, 경영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경영자와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기도 하였다.[9] 그러나 당시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참사를 계기로 하여 당시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이던 중대재해법의 도입 및 제정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020년 6월 11일 마침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후 박주민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중대재해법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1개의 청원입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10] 국

9) 오마이뉴스,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법, 노회찬은 뭐라 말할까", 2021. 07.06 자.

10)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

회는 제출된 법안에 대해 2020년 12월 24일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축소 심사한 후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이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중대재해법 세부사항이 담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해 9월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동년 10월5일 제정되었다.

생각건대 중대재해법은 작업자(노동자)의 과실보다는 기업 내 안전관리시스템 부재 또는 기업조직체계상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기업범죄라고 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산안법(일명 김용균법)으로도 기업자체 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부터, 종사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법인) 및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2. 중대재해법의 구성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책임의 범위와 대상, 강화된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 총 4장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장 총칙은 이 법의 목적(제1조) 및 정의(제2조)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2장은 중대산업재해, 제3장은 중대시민재해, 제4장은 보칙과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2장 중대산업재해(제3조-제8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제4조)와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제5조)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 제4조와 제5조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행위자 이외에도 법인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3장 중대시민재해(제9조-제11조)도 제2장과 같은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제9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 제9조 위반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조에 법인 등 기업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2장 중대산업재해와 제3장 중대시민재해의 차이로는 제3조(적용범위)규정이 제2장 중대산업재해에서 적용이 배제되나, 제3장 중대시

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청원인 김미숙 외 100,000인이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그것이고, 위 법안 모두 2020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발의된 것이다

민재해의 경우 위 규정이 없다는 점, 제2장의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제5조) 관련 규정이 제3장에 없는 점, 그리고 제2장 제8조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3장에는 동 규정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제4장 보칙(제12-16조)에 형 확정사실의 통보(제12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13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제14조) 등 절차적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정부로 하여금 중대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주 지원, 예산 확보, 계획 수립, 교육 및 홍보, 예산 지원 등의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Ⅲ.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1. 서 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위 법안들의 공통점은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의 예방을 통해 사업장의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11] 중대재해법 제1조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바,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 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와 그 목적은 '중대재해 예방' 과 '생명 및 신체의 보호' 이며, '처벌' 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아래 제정된 중대재해법

11) 국회,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2차(2021년1월8일) 국회본회의회의록", 2012, 43면.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요 내용

중대재해법은 입법화 과정에서부터 공포 및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의 정의를 시작으로 하여 동법의 핵심쟁점 사항인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자와 그 범위, 그리고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과 제재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법 제2조 제1호에 중대재해를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하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한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제1호[12]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가 위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할 경우 중대재해에 해당하게 된다.[13]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를 제외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살피건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의 개념은 산안법상의 중대재해의 개념과 달리 산업재해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시민재해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14]

---

12) 산안법 제2조 제1호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조 제2호에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13) 김영국, 앞의 논문, 115면.

14) 한편 중대재해법과 산안법에 규정되어있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이 서로 다른 결과책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법규의 명확성과 법규범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정합적 입법의 오류라 비판하며, 법적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사안에 대한 부분은 통일적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와 목적

1)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의 주체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제4조),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제9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등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법상 일반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보건상의 피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의 수범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라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 영위, 타인의 노무를 제공 받아 사업을 하는 자(개인사업주에 한함)를 의미하고,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제2조 제8호 및 동조 제9호 가목).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생각건대,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달리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수범자인 사업주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산안법의 경우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의 종사자,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형식을 불문하고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차례 도급이 행해지는 경우 수급인 및 수급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 사업 및 사업장에서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등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무주체인 사업주의 범위가 더 넓게 규정되어 있다고 볼

(강영기 외,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8, 215면).

15) 다만 산안법의 경우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제77조)을 두어 "노무를 제공받는 자" 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 있다.

한편 경영책임자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하다. 즉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대표이사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는 이에 준하여' 라는 법문으로 인해 안전보건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와 동일인 또는 다른 사람인지, 만약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전보건확보에 관한 업무 담당자가 대표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더 나아가 '또는' 이라는 법문으로 인해 책임의 주체가 선택적 또는 병존적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16] 이처럼 안전보건확보 의무 주체의 논의는 중대재해의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목적

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의 주체는 동일하나 그 목적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의 목적 중에서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며 하며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도급·용역·위탁포함)을 목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중대산업재해와 달리 중대재해법 제9조 제1항과 제2항 각각 1호에서"점검"이 추가된 점이다.[17]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내용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18] 즉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16)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Ⅳ.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검토·제언- 2.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다루고자 한다.

17) 안전 "점검" 규정이 있는 입법 사례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제1절, 교통안전법 제33조, 항만법 제38조 등이 있다.

18) 중대재해법은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통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도급·용역·위탁 등을 제3자에게 맡긴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

살피건대, 위 ②와③의 경우 그 취지와 의무의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①과 ④의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①의 경우 의무의 내용자체가 형벌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측면에서, 향후 명확성 원칙 및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20] 그리고 ④의 경우는 매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우려가 있기도 하다. 이에 ①과 ④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21]

생각건대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이행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는 한편,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제재 규정

중대재해법 제6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제6조 제1항),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6조 제2항). 또한 중대재해법은 제7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외에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동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7조 단서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않도록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동법 제9조에 규정하고 있다.

19)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고 있다.

20) 김영국, 앞의 논문, 119면.

21) 중대재해법 제4조 제2항;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Ⅳ.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검토·제언- 3.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에서 다루고자 한다.

니한다는 법인의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동법 제6조 제1항에 임의적 병과규정과 함께 제6조 제3항에 제6조의 죄로 형이 확정 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동종누범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은 형사제재뿐만 아니라 제8조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제8조 제2항). 그리고 이에 더해 중대재해법 도입 당시 관심이 높았던 징벌적 손배배상 규정이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제15조 제1항 단서에 법인의 면책요건도 함께 규정되어 있다.

3. 소 결

지난해 1월, 중대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법이 제정·공포 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은 도입 및 입법과정 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나름의 주장을 통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한 불만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 그리고 시행 중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1호 사고인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붕괴 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사고들로 인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입법 또는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22)]

한편 노동계와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부터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즉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는 안전보건확보의 의무 내용, 그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질병의 범위가 넓고 경미한 증상도 포함돼 사업주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특히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있어 뇌심혈관계

22) 아이뉴스, "중대재해법 한달.. 재계, 곳곳서 '곡소리', '보완 입법 절실'", 2022.02.06 자.

질환 및 근골계 질환과 같은 과로질환의 경우가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노동계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시행령에서는 납, 수은, 일산화탄소, 급성중독, 보건의료종사자 혈액 전파성 질병 및 산소결핍증 등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만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과관계의 명확성과 사업주 등의 예방가능성이 높은 질병 및 피해의 심각성 등 중대재해에 포함되는 직업성 질병을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의해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한다.[23]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과로질환이 제외되면서 동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중대시민재해 즉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이번 시행령에 중대재해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기도 하다.[24]

생각건대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한 논란은 다양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중대재해법의 핵심내용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과 그 이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형사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장을 바꿔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검토·제언 해보고자 한다.

Ⅳ.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에 관한 검토·제언

1. 서 설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종사자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에 사업주와 경영자책임자에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

23) 국무조정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자료, 2021.09.28, 2면.

24) 본고에서는 위 부분과 관련하여 지면 제약상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위 내용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다중이용성과 위험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중이용시설 적용범위를 구체화 하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하철,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공항, 의료기관 등 일정면적 이상의 실내공기질법상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내주차장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및 전통시장은 제외되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 위험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업종을 포함하고 있고, 그 이 외에 바닥면적 연면적 2천m2 이상 주유소, 가스충전소, 놀이동산, 그리고 준공 후 10년이 넘은 도로교량, 철도교량 및 도로터널, 철도터널을 포함하고 있다. 살피건대, 현행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광주 건물철거현장붕괴사고와 같은 건설 및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중대재해법상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와 관련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그리고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내용 및 이행조치와 더불어 최근 기업의 형사책임 근거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법은 그간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발생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동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사업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중대재해법 제2조 제8호와 제9호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먼저 사업주에 대해서 동법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복하자면, 중대재해법상 사업주의 개념이 산안법상 사업주의 개념보다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안법상 사업주는 원칙적[25]으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법의 경우 근로자 보다는 폭넓은 '종사라'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제2조 제8호에서 사업주 개념을 정의한 이후, 제3조 적용범위에서 사업주를 '개인사업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동법의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수범자인 사업주는 '개인사업주'임이 명확하다.

다음으로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또 다른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 동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다.

---

25) 산안법도 예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규정(산안법 제77조)에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 로서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일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다.

즉, 현재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의 표현이 애매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책임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견해[26]가 있는 반면, 중대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등은 종사자와 일반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법적책임이 단지 경영자라는 (형식적인) 지위에서 부과되는 결과책임이 아니라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직접적 행위자로서, 그 의무위반에 대한 행위책임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27] 살피건대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수범자는, 그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인 바, 법규범의 수범자 특히 경영책임자를 어떠한 기준으로 그 범위를 확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동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업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통상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업을 추진·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대재해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산안법상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계획 수립 의무규정[28]과 중첩 되고 있어,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였을 때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9] 다만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업무를 총괄하거나 집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의 경영책임자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

---

26) 이근우, 앞의 논문, 225면.

27)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법학』 제7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3, 285-286면 이하.

2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고(제1항), 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제2항), 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9) 법원은 구 산안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의 의미에 관하여 "공장장이나 작업소장 등 명칭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 로 해석하고 있는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에는 "사업을 대표" 한다는 부분이 추가되고, "당해 사업장에서" 라는 장소적 한정이 제외되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 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규정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라는 법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30] 생각건대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라는 법문의 해석은 경영책임자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영책임자와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또한 그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사결정과 감독업무 등을 함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법 문언이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란, 사업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분야' 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 즉 대표이사에 준하여 안전보건확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배치 및 예산 편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업무분야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31] 그리하여 법 문언이 '또는' 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안전보건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 가 있으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통상의)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32]

생각건대 현행 법 규정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법 문언이 불명확하여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완입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에 관한 법 규정인 '또는 이에 준하여' 라는 법 문언은 해석을 통해 그 의미가 현장관리소장이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은 중간관리자가 아닌, 적어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력, 시설, 조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의 제정취지가 그간 산안법 위반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지정된 경우 대표이사나 기업이 형사 처벌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

3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영국, 앞의 논문, 126면 이하 참조.

31)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를 신설 · 선임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조선, 정유 등 중후장대 산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은 대표이사나 사장급 CSO를 잇달아 선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또한 CSO라는 직책을 신설 · 선임하였다(매일경제, "'중대재해에 사운 걸렸다'...안전 총지휘하는 10대그룹 인사들 면모 보니" 2022.02.20 자.).

32) 최근 들어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CSO를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위 임원을 CSO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중대재해발생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요 10대그룹의 오너들 중 정의선 회장, 신동빈회장, 허세홍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지주사나 전략 · 서비스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거나, 사업의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이라 중대재해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다. 그리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를 지정(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면책된다고 단정할 순 없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서도 '또는' 은 선택적인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듯하다.[33] 따라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 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법규범의 수범자 및 처벌대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3. 안전보건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동년 10월 5일 제정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예고 후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노 · 사단체, 협 · 단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한다. 특히,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 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절차도 정비하였다고 한다. 한편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틀이라고 하였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중대재해법 제4조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법 제4조 제1호와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에 시행령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의 내용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이행 조치와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34]

먼저 동법 제4조 제1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

3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 2021.11, 21-24면 참조.

34) 원료 ·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 공중교통수단과 관련된 내용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21.09.28, 3면 참조.

으로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안전·보건업무·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500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순위 200위 이내), ③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④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편성과 용도에 맞게 집행관리, ⑤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충실성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1회 이상 평가·관리, ⑥산안법상의 기준이상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배치, ⑦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⑧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⑨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조치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마련, 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4조 제4호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보고받아 법령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함에 있어, 그 점검에 대해 지정기관에게 점검을 위탁함이 가능함, ②유해·위험작업에 관한 법령상 의무교육실시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수립부터 전담 조직, 필요한 예산, 전문 인력, 종사자 의견 청취 및 도급 시 기준·절차 마련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상의 조치로는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및 안전보건교육의무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행령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교육방법 등에 관한 내용과 중대산업재해의 형이 확정된 경우의 공표 내용,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건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상의 조치는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형사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의 틀로 이해된다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제정된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영되지 되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있다. 그러한 비판들에 있어서는 중대재해법의 향후 보완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들을 명확히 해줌으로써 시행령을 좀 더 촘촘히 수정·보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 중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상 기업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부과된 안전보건확보의 의무와 그 내용은 적어도 경영책임자가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원인은 기업활동이 복잡한 조직구조 내에서 복수의 자연인에 의한 중첩된 행위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의 불비나 조직구조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에 중대재해법 제정취지와 시행령에 규정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부과된 구체적인 의무 및 조치는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안전보건체계가 어떻게 구축해야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처벌의 근거가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이 아닌, 사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4. 기업의 형사책임의 일 근거로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와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종사자와 일반시민이 사망하였다면 기존에는 작업자의 과실 또는 운이 나빠서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치부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기업범죄이다. 따라서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의 시작은 그러한 인식의 전환으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는 기업범죄에 대해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양벌규정은 형법이론상 범죄주체가 될 수 없는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법인)범죄에 있어 일반형법이 아닌 부수형법에서 양벌규정을 통해 실행행위를 담당한 직접적 행위를 처벌하고, 이에 부수하여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또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우선 처벌한

다음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기업처벌구조와 동일하다. 그리하여 현행 기업처벌 구조와 동일한 형태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기업 및 기업범죄 행위자들에게 죄의식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부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업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방법도 상당히 미온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중대재해법 또한 사업주와 경영자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보건확보 및 조치' 의 구체적인 내용의 불명확성에 대한 논란도 위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생각건대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처벌의 구조가 아닌 독자적인 처벌 근거를 통해 경영책임자 또는 기업에 형사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 또는 경영책임자의 독자적인 처벌근거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의 업무활동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시책이지만, 그 내용은 위법방지, 즉 법준수체제의 정비와 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의 명확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영책임자는 기업전체를 조직 및 관리하는 것을 업무로 하고 있고, 그 업무 중 안전보건확보의무라는 업무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법질서 특히 상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기업전체를 조직하고 관리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명확화 함에 있어서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기업구성원들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의 내용 즉,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설치 및 효과적인 운영여부는 기업의 형사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업 내 효과적인 준법프로그램의 적절한 운용은 기업과 동일시되는 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구성원들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 하는데 기여하여 기업범죄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컴플라이어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용은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구성원의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여 내면적 자기통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로 평가되기도 한다.[35] 그러므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효과적

35) Theile, Unternehmensrichtlinie - Ein Beitrag zur Prävention Wirtschaftskriminalität?, ZIS, 2009.9, S. 410f.

인 운용은 기업의 형사책임의 명확화 즉 처벌과 면책의 일응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나오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855명이였으나, 2020년에는 이보다 소폭 증가하여 88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고 한다. 이는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21년 1월 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그러한 비극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중대재해법의 입법과정과 시행령의 제정 이후, 법 시행 전 까지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그러한 논란은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도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사전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필연적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이 시행 된지 넉달째인 현 시점에도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법에 대한 논란의 또 다른 이유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본다. 즉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 등에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이 무조건 처벌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언론보도들 또한 자극적인 단어들 즉 '직원 잘못 놔두고 기업 잡는 중대재해', '작은 사고에도 옥살이... 기승전 사업주 처벌법' 등 중대재해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

물론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이 처벌되는 경우는 동법 상 그들에게 부과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만 처벌된다. 즉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의 경우에도 동법 제7조와 제11조에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의 올바른 이해의 시작은 동법의 도입 및 입법취지를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중대재해 발생 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안전관리담당 감독자)와 실무자(현장관

리소장) 위주로 형사처벌이 되고 있어 중대재해사고의 실질적 예방에 미흡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사업주나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케 해야 하는 틀의 운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동법에 따르면 최고안전책임자(CSO · Chief Safety Officer)가 안전보건업무에 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한과 책임은 특정업무에 대한 일부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그것만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중대재해법은 기존의 산안법과 달리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대재해법의 올바른 이해의 시작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업 등을 처벌 또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결코 실패한 법률이라고 속단할 순 없다. 왜냐하면 현재 중대재해법은 시행 초기 단계이고, 모든 법률들이 겪게 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례로 중대재해법의 모델이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또한 도입 및 시행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정착화 되어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 중대재해법도 그러한 과정을 겪고, 견디면서 더욱 단단해져 동법의 본래 제정목적인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논문투고일 : 2022. 3. 27, 논문심사일 : 2022. 3. 31, 게재확정일 : 2022. 4. 14.

▌참고문헌

김영국,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과 법정책적 과제-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의관점에서-”. 입법학연구 제18집 제1호, 한국입법학회, 2021.02.

강영기/이창대/이성남,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방안등에 대한검토”, 법과 기업연구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8.

김혜진,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2021.03.

노상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대책” 사회법 연구 제42호, 한국사회법학회, 2020.12.

손익찬, 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가?, 월간 한국노총 제562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4.

이근우, “중대재해처벌법 경과와 제정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임재범, “노동존중 실천을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월간 한국노총 제562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0.

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법적 쟁점에 관한 법학계의 의견서”, 민주법학 제7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3.

정진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정에서의 법적쟁점과 남겨진 과제”, 『과학기술과 법』 제27집 제2호, 한남대학교과학기술법연구원, 2021.06.

조기홍, “2018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 - 위험의 외주화 속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월간 한국노총 제541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18.

최명선/김경희/이조은,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할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263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한 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 15년 평가와 전망”, 매일노동뉴스 기획좌담회, 산업보건 제386권, 대한산업보건협회, 2020.

한창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 월간 복지동향 제261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20.

국무조정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자료, 2021.09.28.

국회, “제21대 국회 제383회 제2차(2021년1월8일) 국회본회의회의록”, 201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20.

Theile, Unternehmensrichtlinie - Ein Beitrag zur Prävention Witschaftskriminalität?, ZIS, 2009.9.

▮ Abstract

A Study on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ies under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Han, Sung Hoon**

According to the industrial accident death statistic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4 workers a day go to work and cannot return home. Accordingly, the Major Disaster Act promulgated on January 26th seems to have expressed the minimum will to not overlook such a tragedy any longer.

However, the controversy continues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erious Disaster Act to the time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enacted. In particular, it is thought that such controversy arises because, although legislative legitimacy was secured through national consensus as well as stakeholders, the inevitable process of enhancing legislative efficiency through pre-legislative evaluation was not properly performed. So, it has been less than two months since the Serious Disaster Act was enacted, but the controversy is still not fading.

On the other hand, another reason for the controversy over this law seems to be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s about the Serious Accidents Act. The purpose of the Major Accidents Act is to fundamentally prevent major accidents by strengthen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f companies and increasing investment in safety-related facilities.

Nevertheless, in the case of a serious accident, it is understood that the business owner, manager, and company are unconditionally punished. Media reports also impede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serious accident law with provocative words, such as ‘a serious accident that catches a company while covering up an employee’s fault’ and ‘the employer punishment law that makes even a small accident imprisoned’.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1S1A5B5A16077815)

** Researcher Professor, Institute for Leg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employers and business managers, who are the subject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ar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when their obligations are violated. However, business owners, business managers, and companies will be punished only in cases where a serious accident occurs in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secure safety and health" imposed on them. In other words, if a business owner or manager fulfills their obligations to secure safety and health, such as establishing a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even if a serious accident occurs, they are not liabl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in the case of corporations, Articles 7 and 11 of the same Act provide immunity from immunity.

It is believed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the Serious Disaster Act, it is necessary to first recall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and legislation. This is because this law was enacted in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in the event of a serious accident, the actual prevention of serious accidents is insufficient because criminal punishment is mainly imposed on the person in charge (supervisor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and working person (director of field management) at the unit business site. In addition, in the case of a major disaster, it was difficult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due to structural problems in the corporate organization, so that the employer or company could not be held criminally responsible.

However, under the Serious Accidents Act,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mpanies must bear criminal responsibilit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Act, even if the person in charge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has been given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equivalent to that of the employer or manager in relation to safety and health work,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re only partially delegated to a specific task,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y have the sam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this respect, the Serious Accidents Act clearly clarifies that companies and those in charge of management have criminal responsibility when a serious accident occurs, unlike the existing Industrial Safety Act. Therefore,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ajor Disaster Act starts with 'punishing the actual person responsible' for the occurrence of a serious accident, rather than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mpanies.

• Key Words Corporate Manslaughter Act, Critical Industrial Accidents,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Corporate Criminal Responsibility, Independent Model